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9. 7.(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3차, 제4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에 관한 건’은 안건논의는 공개로 진행하되, 사업자 의견청취는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2-45-168)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사업자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한 이유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주)에스비에스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주)에스비에스가 소속된 태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에스비에스에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의결권 제한통보를 하고, 5월 4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에스비에스는 5월 20일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에스비에스는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주)에스비에스엠앤씨 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액출자자입니다. (주)에스비에스의 최대주주는 (주)티와이홀딩스로 36.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 제13제5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3조제6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피심인이 소속된 태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11조 2,000억원으로 공정위가 2022년 5월 1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나, 2022년 9월 현재 (주)에스비에스엠앤씨 주식 100분의 40을 소유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에스비에스엠앤씨 주주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에스비에스가 40%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는 J:COM, 3대 주주는 (주)카카오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법성 판단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합니까, 이따 의견을 듣고 합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의견을 듣고 하시지요.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에스비에스”에 대한 의견청취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견청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관계자 입장)

(비공개)

(피심인 관계자 퇴장)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정안건 논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처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5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심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방송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제완화 요구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현행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피심인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제3항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심결서가 작성되는 대로 (주)에스비에스에 시정명령 처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최대주주 (주)에스비에스가 소속된 태영기업집단이 올해 5월 대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에스비에스는 미디어법상의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 분야의 소유·경영 관련 규제개선 작업이 시급합니다. 미디어 관련 법령이 소유·경영 제도를 강하게 둔 취지는 특정 집단의 여론 독과점 방지, 기업과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 방지 등입니다. 해당 규정은 주요 몇몇 방송사들이 여론을 주도할 때에는 적절히 작동했고 적절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가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특정 집단이 여론을 독과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소유·경영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새롭게 바꿔 입듯이 세상이 변하면 대기업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국내 방송시장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자본력을 키우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소유·경영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주)SBS는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대기업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입법 취지와 정책 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주)에스비에스는 법 위반사항 시정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이 현실상 지분매각 불가능과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에스비에스는 보유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J:COM의 경영참여 등 (주)에스비에스엠앤씨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에스비에스가 보유한 (주)에스비에스엠앤씨 주식 중 10%를 초과한 30%에 대해 분할매각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고, 타 주주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익성, 공정성, 경영계획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와 동일한 요건에 대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무처는 소유제한 규제의 개선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피심인의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지분매각이 이어지면 현재 피심인의 2대 주주인 일본계 거대 유료방송업체가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에스비에스 관련 논란과 별개로 글로벌 거대 뉴미디어 사업자의 각축장이 된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조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그들과 경쟁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방송사업 관련 소유·경영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8분 폐회 】